

한국농아인야구소프트볼연맹 정관

2010년 11월 30일 제 정
2017년 04월 08일 전면개정
2017년 12월 09일 개 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맹은 한국농아인야구소프트볼연맹(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 본 연맹은 영문으로 KOREA DEAF BASEBALL SOFTBALL FEDERATION (약칭 KDBSF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맹은 대한민국의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을 대표하고,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를 농사회에 널리 보급하여 농아인의 체력 향상과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국제스포츠교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①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 설정
 - 가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및 의결
 - 나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에 관하여 대한야구협회와 관계기관에 자문 및 건의
2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을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 및 관리
 - 가. 회원단체의 관리 및 지도 감독
 - 나. 지도자, 경기자(대표선수 등)의 양성과 그 자격의 심사 및 확정
3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의 지도, 장려, 보급 및 통할
 - 가. 국내대회의 주최 및 주관 승인

- 나. 대표선수 및 임원의 국제대회 파견을 통한 국제교류
 - 4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에 관한 연구 및 개발
 - 가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규칙의 제정 및 연구
 - 나. 경기시설 설치 관리 및 경기용구에 관한 연구, 개선 및 공인
 - 다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의 기술연구, 자료수집, 조사 및 통계
 - 5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홍보
 - 가. 농아인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에 관한 강습회, 전시회, 순회지도 및 선전계몽
 - 나. 발행물의 출판 및 발행
 - 6.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제2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의 관계

제5조(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의 권리 및 의무)

- ① 본 연맹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1.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회원단체가 되었을 때 경우,
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
 2.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해 건의할 권리 및 소청할 권리
 3.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
 4.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대한 주최, 주관 및 후원할 권리
- ② 본 연맹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정관,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
 2.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 준수 의무
 3. 전년도 사업보고, 수지결산, 당해 연도 수지예산, 기본재산목록 등 총회결과를 보고 할 의무

제3장 회원단체

제6조(회원단체의 자격 및 가입)

- ① 회원단체의 자격은 야구 및 소프트볼 선수가 농아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한다.
- ② 회원단체 가입은 본 연맹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회원단체의 권리) 본 연맹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.

- ①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발언 및 의결하는 권리
- ② 본 연맹이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특전
- ③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
- ④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·주관 및 후원
- ⑥ 본 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기구의 이용

제8조(회원단체의 의무) 본 연맹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지닌다.

- ① 본 연맹의 정관, 제반규정 및 총회,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- ②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
- ③ 사업계획서, 수지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의무
- ④ 기타 조직, 정원, 각종 규정의 변동 시 본 연맹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을 의무
- ⑤ 본 연맹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의무
- ⑥ 본 연맹이 위임한 사업 및 예산, 지원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받을 의무

제9조(회원단체의 탈퇴)

- ① 본 연맹에 가입한 회원단체는 본 연맹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- ② 본 연맹에 가입한 회원단체가 본 연맹 구성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탈퇴케 할 수 있다.

제4장 임 원

제10조(임원)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회장 1인
- ② 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5인 이상 27인 이내
- ③ 감사 2인

제11조(회장의 선출)

-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,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,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.
 - 2.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 - 3. 제2호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, 재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 - 4. 제1차 투표결과 1위,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,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. 결선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.
 - 5. 후보자가 1인인 때에도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야구협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, 본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 - 1.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, 제15조 제2항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,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.
 - 2.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,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.
 - 3. 위 제1호,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⑤ 본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
- ⑥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임원)

-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회장은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27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(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까지로 한다)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.
- ② 전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전무이사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고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, 대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고,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한다.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.
-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대의원(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)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, 재적이사(회장, 부회장 포함)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⑥ 본 연맹의 임원은 본 연맹의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⑦ 임원의 취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보고한다.

제13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

-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사,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
-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.
 1. 제16조에 해당하는 때
 2. 시도지부의 임원 또는 소속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

제14조(임원의 임기)

-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1. 회장의 임기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 2. 부회장의 임기제한 산정에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,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.
 3. 이사 및 감사의 제한 기간 산정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.
-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,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⑤ 감사는 본 연맹의 회계와 업무를 진행한다.
- ⑥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 2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 3.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- ⑦ 임원이 동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- ⑧ 시도지부 또는 소속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임원이 된 자가,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.

제16조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 회장이 될 수 없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7.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또는 연맹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또는 본 연맹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9.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또는 본 연맹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 10. 야구관련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자
- ③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는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 단체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⑤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
제5장 대의원

제17조(구성)

- ①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본 회원단체에 속한 팀의 단장 및 감독으로 정한다.
- ② 본 회원단체에 속한 팀의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각 팀 대표는 총회 참석자를 선정하여 본 연맹에 총회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통보된 자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팀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6장 대의원총회

제18조(정의 및 구성)

- ① 대의원총회(이하 총회라 한다)는 본 연맹의 최고의결기관이다.
- ② 총회는 회원단체의 단장 및 감독 각 1인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.

제19조(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)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(규약) 변경에 관한 사항
-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③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④ 기본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, 기채에 관한 사항
- ⑤ 본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⑥ 회원단체 가입의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
- ⑦ 시도지부의 설치 및 제명
- ⑧ 기타 중요사항

제20조(정기총회와 임시총회)

-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
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 - 3.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어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, 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 후 14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.

-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21조(의장)

-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어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2조(의결정족수)

-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.

제23조(임원의 불신임)

-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.
-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7장 이사회

제25조(구성 및 기능)

-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된다.
- ②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.
 1.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 2.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
 3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4. 사업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5.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,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6. 전무이사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7. 신규 팀 창단 심사 및 승인, 등록과 기존 팀의 본 연맹 등록관련 사항
 8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9. 연맹 해산 및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
 10. 기타 중요사항

제26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.

제27조(이사회 소집)

-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, 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28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
-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.
-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8장 전문위원회

제29조(각종위원회의 설치)

- ① 본 연맹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.
- ② 제1항의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장 고 문

제30조(위촉)

- ① 본 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총회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장 사무국

제31조(사무국의 설치)

- ① 본 연맹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둔다.

-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.
- ④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⑤ 사무국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다만,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.
- ⑥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장 재정과 회계

제32조(재산) 본 연맹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본 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
- ② 기금
- ③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- ④ 회비
- 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, 정부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금, 보조금
- ⑥ 수익금(사업수익, 기부금, 후원금 등)
- ⑦ 기타

제33조(재산의 구분)

- 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(별지 목록1)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용재산으로 한다.
 - 1.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- 2. 기금
 - 3.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(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)
 - 4.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4조(재산의 관리)

- ① 본 연맹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,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차입금(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은 제 외)에 대하여도 같다.

제35조(경비의 조달 등)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보조금, 기부금, 후원금,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36조(기금의 운영)

- ①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해 회계연도결산서에 기금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한다.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.
- ②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37조(예산, 결산의 보고)

- ① 세입, 세출 예산안은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대한야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결과 보고서
 - 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
 - 3. 재산목록서
 - 4. 재산증감 사유서
 - 5. 감사의 감사의견서

제38조(회계의 구분) 본 연맹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제39조(회계원칙) 본 연맹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0조(회계연도)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41조(회계감사)

- ① 감사는 본 연맹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편성이 되지 아니할 경우, 회무집행에 필요한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12장 보 칙

제43조(정관개정) 본 연맹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①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
- ② 정관변경 사유서 1부
- ③ 정관개정안(신·구 조문 대비표) 1부
- ④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
- ⑤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,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

제44조(해산) 본 연맹이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5조(해산시 재산귀속) 본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